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38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11월 8일, 장흥순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11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장흥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적정분포,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실제 운영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가.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 2명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위원회 부위원장을 “도시안전기획관”에서 “안전총괄관”으로 수

정함(안 제4조제2항제2호).

다.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회는 자치구청장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추천한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별첨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위원회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의 의견이 폭넓게 검토·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] 주요 개정내용

위원회 구성		현행	개정안
위원장		1명	1명
부위원장		1명	1명
위원	법조인, 사회복지전문가, 시민단체대표,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	7명	5명
	관련 공무원	3명	3명
	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	-	2명
합 계		10명	10명

-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는 보도상영업시설물(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)의 적정분포,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목적으로 운영되며,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되며,
-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총 2건으로 ‘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의상자 운영’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음([표] 참조).

[표]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
개최(건)	1*	-	-	-	1**

* 2013년 - 회의일시 : '13. 12. 17.(화) 10:00 ~ 12:00
 - 참석자 : 7명(위원장 1, 공무원 1, 시의원1, 전문가 4)
 - 회의안건 : 2014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의상자 운영대상 및 운영순위 선정

**2017년 - 회의일시 : '17. 8. 1(화) 서면심사
 - 참석자 : 7명(위원장 1, 공무원 2, 시의원1, 전문가3)
 - 회의안건 : 2014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의상자 운영자 연장심사
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, 위원 중 7명은 법조인, 사회복지전문가, 시민단체대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,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,
-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, 운영자 입장 대변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- 또한 공정하게 운영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 1명씩 총 2명을 자치구별로 추천받아 이들 총 50명(=2명×25개구)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된 운영자대표 2명(가로판매대 운영자 1명, 구두수선대 운영자 1명)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는 현재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법정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의 추천과 이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시마다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해 운영자를 대변할 위원을 위촉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,
- 현재로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없음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7명”을 “5명”으로, “나머지”를 “2명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, 나머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“도시안전기획관”을 “안전총괄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회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중 각각 1명씩 추천 받은 자 중 무작위 추천에 의해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